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23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서영교 · 허 영 · 이해식
박홍배 · 위성곤 · 민병덕
이수진 · 임오경 · 박희승
이성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1조의 목적에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추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정책적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려함(안 제14조의2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부하여 교육의”를 “교부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의”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 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14조의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u>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 ----- <u>교부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의</u> ----- -----.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u>교부하여야 한다.</u>	<u><삭 제></u>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u>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u> <u>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 교부하여야 한다.</u> <u>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u>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